

2025년 군포시의회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5년 군포시의회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12일
군포시의회의장

1 채용분야

- 채용분야 : 군포시의회 환경미화
- 채용인원 : 1명
- 채용방법 : 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근무기간 : 2025. 7. 1.(화) ~ 2025. 12. 31.(수)
- 근무부서 :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 근무요일(시간)

구 분	근무요일	근무시간	비고
청사관리	월 ~ 금	07:00~13:00 (11:30 ~ 12:30 휴게시간)	주 25시간 근무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내용 :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사무실, 회의실, 복도, 계단 등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정리 등 미화 업무 전반
- 보수(4대보험 및 공제세액 포함)
 - 기본급 52,550원/일
 - 급식비 5,500원/일 (1달 만근 기준 최대 110,000원)
 - 교통비 2,500/일 (1달 만근 기준 최대 50,000원)

2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역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포시 거주자
- 우대조건 : 공공기관 청사관리 유경험자 (경력증명서 제출 必)
- 근로기간 중 군포시에 중복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군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6조까지에 따른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12. 장기치료, 질병, 정신적 제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1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의 가족채용 제한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이 아닌 자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등록 단계에서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가족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예정

3 채용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준표에 의한 적격성 심사

- 서류심사 필수 자격기준 합격자에 한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합격자 선발
- 최하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별표8]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5~10% 가점부여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서만 반영되며,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必
- ※ 단, 가점을 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통과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단, 1명 이상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임

※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시 불합격
 - 1명 이상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동점자의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우선선발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1차 시험(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차 시험에서도 동점일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 채용

다.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및 채용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불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4 채용일정

- 공 고 : 2025. 5. 12.(월) ~ 2025. 5. 16.(금)
 - 원서접수 : 2025. 5. 14.(수) ~ 2025. 5. 16.(금) [3일간]
 - 접수처 :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 접수시간 :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5. 22.(목),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25. 6. 4.(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6. 13.(금)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군포시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병역사항은 37세 이상 불필요)

[해당자만 제출]

- 경력증명서 1부(반드시 원본 제출).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증빙자료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명서 등),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경력증명서의 경우 원본)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추후 공무원 채용 응시할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채용 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조건, 업무내용 등은 예산 및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류접수처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직무관련, 채용절차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031-390-87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공정채용확인서 1부.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9.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1]

응시원서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불합격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응시번호		응시분야	부서 : 의회사무과 분야 : 군포시의회 환경미화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전화) (H.P)				
자격 면허	취득일자	종 별			
주 요 경 력	기 간	직장명	직 위	담당업무	비고 (전일/시간제)
		(최종경력부터기재)			
귀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응 시 자 (인)					
군포시의회의장 귀하					

응 시 표	성명	한글	※응시번호			
			응시분야	부서 : 의회사무과 분야 : 군포시의회 환경미화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2025년 월 일 군포시의회의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부서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부서를 기재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자격면허 : 소지한 자격 및 면허를 기재(증빙자료 첨부 필수)
 -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자격증(면허증) 취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반드시 제출
6. 주요경력
 - 자격요건이 경력인 경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란 작성 시 참고사항 >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 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2025. . .

작성자 : _____ (서명)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1~2매 내외로 작성

※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신지역, 혼인여부, 본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업, 직업, 재산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이를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군포시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서명)

군포시의회의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군포시의회의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국문, 한자), 국적, 개인영상정보(사진), 주소, 성별, 연락처, 자격·면허증, 자기소개, 경력, 병역, 가점취업 대상 여부, 전자우편, 계좌번호	채용절차 진행, 근로계약 및 급여, 제증명 발급, 정책자료 활용 등	-채용신청 관련 정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 보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 동의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채용절차 진행, 근로계약, 사대보험 가입, 국세청 신고 등	-채용신청 관련 정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 보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제공기관
성명(국문, 한자), 학력·자격·결격사유 등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채용절차 진행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시험 위탁기관 -인사담당 조회기관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발급 기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일 : 202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군포시의회 환경미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1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군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31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해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5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군 포 시 의 회 의 장 귀하

공정 채용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군포시의회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군포시의회의장 귀하

[붙임 7]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군포시의회의장 귀중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군포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p>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p>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 지원자

(서명)

[붙임 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분만 작성하시고,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경기도 군포시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포시의회의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